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윤준병 · 문금주
김원이 · 차지호 · 임미애
조인철 · 박용갑 · 이춘석
조계원 · 허 영 · 이용선
정준호 · 김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,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,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.

이에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(강제 근로의 금지), 제8조(폭행의 금지) 또는 「선원법」 제25조의2(강제 근로의 금지)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

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
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7조
개정).

법률 제 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 또는 「선원법」 제25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2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제37조(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 또는 「선원법」 제25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